

# 공연예술기록의 초상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ssues on the Right of Portrait for Performing Arts Archives

이 호 신(Ho-Sin Lee)\*

### 〈목 차〉

- |                  |                           |
|------------------|---------------------------|
| I. 여는 말          | 3. 예술가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사진과 초상권 |
| II. 초상권의 개요      | IV. 공연예술아카이브 운영과 초상권      |
| 1. 초상권의 개념과 보호범위 | 1.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            |
| 2. 초상권의 한계       | 2. 수집과 제작                 |
| III. 공연예술기록과 초상권 | 3. 정보서비스와 공표              |
| 1. 공연예술과 공연예술기록  | V. 닫는 말                   |
| 2. 공연 현장 기록의 초상권 |                           |

### 초 록

이 글은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초상권 문제를 검토하고, 실무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상권의 개괄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공연예술사진과 영상의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점검사항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초상권은 인간의 외면적 모습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공공의 알 권리와 충돌할 경우에 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호의 여부가 결정됨을 밝혔다. 아울러 공연은 사회적 표현 행위의 하나로 출연자는 공연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생활로 보기는 어려움을 밝혔다. 공연예술아카이브는 기록물의 내용과 공개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공연예술기록, 공연예술아카이브, 인격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 ABS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ssues of the right of portrait and to suppose practical guideline for performing arts archives. The right of portrait protects external looks of the human being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human dignity, privacy of a secret and freedom. But sometimes these rights are limited in case of the right to know of the public shall have precedence to the interests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t is hard to regard Performing Arts as a private life in two respects: first, Performing Arts is just one of societal expressions, two, performers are conducting a given role as a performing character. Producing database with the photos and videos under the reasonable agreement from the performers and making it available as a service can be disclaimers of the right of portrait. It is hard to be acknowledged, however, as disclaimers in case of being undermined sameness in the course of using the portraits of the performers.

Keywords: Performing arts record, Performing arts archives, Right of morality, Right of portrait, Publicity right

\* 국립예술자료원(The Korea National Archives of the Arts) 정보서비스팀장(leehs@knaa.or.kr)

• 접수일: 2013년 2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3년 3월 3일 • 최종심사일: 2013년 3월 26일

## I. 여는 말

기록 보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기록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현장과 예술 작품을 기록화하고 보존하려는 시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국립예술자료원이 출범하면서 예술기록과 관련되는 국가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고,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국립극장의 공연예술박물관도 이러한 시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민간에서도 연극제, 한국춤문화자료원과 같이 공연예술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표방하는 단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록물 가운데에는 공연 현장을 기록한 사진과 동영상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 공연예술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만 존재하는 순간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공연의 전모를 유추하고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sup>1)</sup> 사진이나 동영상은 공연의 재현과 복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써 공연예술기록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연예술기록을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예술작품에 준하는 기록들을 수집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인 선결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공연사진과 동영상은 출연자들의 얼굴과 신체 윤곽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에 관한 검토를 함께 필요로 한다. 공연예술기록의 수집과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공연기록물에서의 출연자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한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초상권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격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해서 보호가 이루어진다.<sup>2)</sup> 초상권에 관한 연구는 언론법의 주요 영역 가운데 하나로 신문이나 방송 보도에서의 개인의 초상 사용에 관한 문제가 그 연구<sup>3)</sup>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초상을 재산권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퍼블리시티권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sup>4)</sup>

1) 이진원, “한국 전통공연예술 사진에 대한 검토 : 1945년 해방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악기학, 제5권(2007), pp.57-83 ; 김정민, “무용의 공감각적 기억과 잔상을 보존하는 대안으로서 영상매체,” 에피스테메, 제4호(2010), pp.57-75.

2) 이호홍, 초상권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상의 입법적 규율을 중심으로(서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01), p.19.

3) 박용상, 명예훼손법(서울 : 현암사, 2006) ; 박경신, “순수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가치인가, 규범인가,” 창작과 권리, 제51호(2008), pp.2-34 ; 류종현, 양재규, 기자와 변호사가 함께 쓴 초상권 이야기(서울 : 한국방송기자협회, 2010) 외 다수.

4) 정경석, “초상권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저스티스, 제98권(2007), pp.122-146 ; 김유철, 2010, “광고활동에 있어서 초상권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제24호(2010), pp.5-14 ; 이경률, 박현우, “상업사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초상을 신문이나 방송으로 보도하는 행위 또는 광고와 같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공연예술기록의 수집과 활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창작과 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예술기록기관의 운영은 그 목적과 활용양상에서 보도나 광고와는 상당히 구별되는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연예술기록의 수집과 서비스에 필요한 초상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런 까닭에 공연예술기록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참고할만한 지침이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공연예술기록기관이 살펴야하는 초상권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초상권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그 개념과 권리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수집 기록물의 종류를, 초상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에 한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나서 초상기록물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초상권의 문제를 법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공연예술기록기관에서 공연사진과 동영상을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 II. 초상권의 개요

### 1. 초상권의 개념과 보호 범위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을 실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격보장)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해서 보호가 이루어진다. 또한 민법 제751조 및 제752조의 규정에 따라 생명, 신체, 자유, 명예와 같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의 일종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2005년에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7370호, 이하 <언론중재법>) 제5조<sup>5)</sup>에서 초상권을 법적으로 보호

진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AURA, 제22호(2010), pp.101-110 외 다수.

5)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는 권리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과 민법, 언론중재법이 규율하는 내용은 모두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초상권 보호는 실질적으로 판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초상권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sup>6)</sup> 또한 그 견해를 넓혀서 ‘사람의 얼굴, 음성, 성명, 서명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특성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광고 등에 무단사용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sup>7)</sup>라고 보기도 한다.

초상권은 인간의 외면적 모습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묘사된 초상이 사회일반인이 보아 누구인가를 곧 알 수 있을 정도로 묘사된 경우에 한하여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sup>8)</sup>. 다시 말해서 초상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표현된 초상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정도 이상의 식별력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한다. 특정인에 대한 최소한의 외면적 식별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면 초상의 표현 방법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초상권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초상의 표현 방법에 관해서 법원은 “사진은 물론 몽타주, 소묘, 캐리커처 및 초상화 또는 인형과 같은 형상적 표현도 모두 초상에 해당한다.”<sup>9)</sup>고 판시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을 모두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초상권은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넓은 범주에서의 인격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재산적인 측면에서의 권리도 함께 보장이 된다.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초상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인 촬영거절권과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을 담은 초상의 복제나 공표를 거절할 수 있는 공표거절권으로 구성이 된다. 한편 영리적인 목적으로 초상을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는 초상권의 재산권적인 측면을 구성한다.

초상권의 침해는 초상 당사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초상을 작성하는 행위와 작성된 초상을 당사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타인의 초상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를 구성한다. 초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할 의사와는 무관하게, 촬영 그 자체만으로 초상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사진의 촬영이 당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은밀히 진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초상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묵시적인 승낙의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촬영자가 초상 당사자에게 촬영의 사실을 알리고 그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6)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7)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5.11. 선고, 87가합6175 판결.

8)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5.11. 선고, 87가합6175 판결.

9) 서울지방법원 1997.8.1. 선고 97가합16508 판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한편 동의하에 작성된 초상이더라도, 그 공표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초상 사진의 작성을 허락한 것이 곧바로 공표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초상 사진 작성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상 자체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 반면에 무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언제나 그 의사의 철회가 가능하다.<sup>11)</sup> 공표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공표의 범위와 방법은 당사자가 허락한 범위에 국한된다.

## 2. 초상권의 한계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촬영이나 공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초상권의 보호는 다른 인격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회구속성에 따라 피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sup>12)</sup> 개인의 사적인 이익의 보호보다 공공의 알 권리나 초상의 공개가 공동체의 이익이 훨씬 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 권리가 제한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초상의 촬영이나 공표가 공적인 정보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로만 엄격하게 해석되고, 공적인 정보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상충하는 이익을 어떻게 비교형량할 것인가의 문제는 초상권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초상권이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각적인 이익 형량을 통하여 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자료가 공표한 자의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인지의 여부, 그 자료의 사회적인 중요성, 자료를 취득한 방법의 정당성, 자료의 배포 범위, 초상 당사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상권 침해를 판단하게 된다.<sup>13)</sup> 우리 법에서는 초상권을 별도의 법률로써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보호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그 상세한 내용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초상권은 명문화된 권리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법(Common Law)상의 불법행위의 일환으로 보호가 이루어지며 대개 프라이버시나 명예훼손에 준해서 보호가 이루어진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적인

10) 이정인, “현대미술에서 이미지 차용의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연구,”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2012), p.186.

11) 박용상, 전계서, p.538.

12) 박용상, 전계서, p.529.

13) 박경신, 전계논문, pp.16-17.

인물이나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제한되기도 한다. 초상권을 명문화된 법률로 보장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시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인물의 초상, 풍경이나 그 밖의 정경에 부수하여 찍혀진 모습, 집회 또는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그 전파와 열람이 보다 높은 예술적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 사법 및 공공질서의 목적을 위한 관청에서의 사용은 당사자의 승낙이 없이도 전파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언론중재법>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진 경우,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인정하여, 유족(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사후 3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일반적인 표현 행위 전반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지만, 초상권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률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을 초상권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표현되는 내용 자체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특정한 주제를 설명하는 데에 합리적이고 적합한 연관성을 지닌 개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sup>14)</sup>. 한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초상이 작성되고,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공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초상권 행사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초상의 작성이나 공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요건은 초상의 작성이나 공표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은 독일 <미술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시사적인 영역을 위한 경우, 학문이나 교육, 예술의 자유를 위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Ⅲ. 공연예술기록과 초상권

#### 1. 공연예술과 공연예술기록 : 사진과 동영상 중심

공연은 “극장이나 야외 공간에서 관객에게 연극, 무용, 음악 따위를 연출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sup>15)</sup> 공연예술은 배우·연주자·무용수와 같은 인간의 구체적인 실연 행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점에서 문자나 이미지만으로도 예술적 표현이 가능한 다른 장르와는 구별이 된다. 또한 문

14) 박용상, 전거서, p.550.

15) 김광요 등, 드라마사전(서울 : 문예림, 2010), p.33.

학은 문자라는 표현매체에 고정되고, 미술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특정한 오브제에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와는 달리 공연예술은 절대로 그 현장을 떠나서 어떤 매체에 고정되거나 복제가 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공연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과 장소에서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일회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공연예술의 복제가 불가능하고, 일회적이라는 특성은 그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상당히 난해하고 까다로운 작업으로 만든다. 어떤 매체에도 고정되거나 복제될 수 없는 공연을 원본 그대로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연의 일회성과 현장성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연예술 종사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공연기록을 생산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기록 제작을 독려하는 촉매제로써 특특히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과 동영상은 현장예술가들이 가장 활발하게 기록을 제작하는 영역이다. 사진은 공연의 순간을 가장 직관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으로, 동영상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공연을 가장 유사한 형태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동영상은 공연의 공감각적 이미지와 잔상을 보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sup>16)</sup>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공연현장에서 생산되는 기록이 비단 사진과 동영상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이벤트로서 공연은 그 준비과정과 실제공연, 공연 이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실로 다양한 기록물을 생산해낸다. 예컨대 공연의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악보나 대본, 음반을 비롯해서 공연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소개하기 위한 포스터, 팸플릿, 보도자료, 현장에서의 연습과정을 담은 연습일지, 회의록, 기획서, 공연의 진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회계서류와 계약서, 공연에 대한 관람평과 보도기사, 학술적인 분석과 평가를 담은 연구논문이나 학술서적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기록들이 공연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수집과 보존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공연예술아카이브가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연예술 기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사진과 영상기록을 포함하지 않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초상권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사진과 영상기록으로만 논의를 한정한다.

공연과 관련해서 생산되는 사진과 동영상은 그 기록의 내용과 구성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연의 현장을 순수하게 기록한 실황사진과 동영상이다. 공연이라는 특별한 상황 자체의 충실한 재현과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이는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기록 제작의 방법으로, 공연 실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고, 가능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록하려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둘째, 공연을 바탕으로 하지만 공연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이다. 대개 이러한 기록들은 공연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방식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공연실황, 연습 장면, 출연자의 인터뷰 등을 한 데 모아서

16) 심정민, 전계논문, p.58.

별도의 편집을 거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영상, 홍보나 판매를 위한 목적에서 별도의 퍼포먼스와 연출을 바탕으로 구성된 사진과 영상, 공연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진이나 영상<sup>17)</sup>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기록들은 공연 현장을 단선적이고, 평면적으로 기록하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기록 그 자체로써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미학적 성취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황 사진·영상과는 구별이 된다. 셋째, 공연과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제작된 기록이지만, 공연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다. 공연에 참여하고 관계하는 여러 예술가의 일상이나 공연 이외의 활동을 담은 사진과 영상, 공연예술단체나 공연장의 활동 내역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공연과는 무관하게 작성된 기록이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는 공연과는 분리된 상태에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연기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연예술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공연예술기록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공연 현장 기록의 초상권

### 가. 공연실황 사진과 영상

공연 현장에서 직접 작성된 공연 사진과 동영상은 공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기록이 제작이 된다. 공연은 배우와 무용수, 연주자의 몸짓과 표정, 연기를 적절한 연출을 통해서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연 기록 사진과 영상은 실연자의 무대 위에서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공연예술아카이브에서 이러한 기록들을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상권 문제는 공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연예술은 관객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학이나 미술과 같은 다른 장르의 예술 행위와는 구별이 된다. 배우와 무용수 그리고 연주자는 실연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예술적인 감흥을 연기와 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게 된다. 공연예술은 소리나 연기, 동작을 관객들에게 표현하는 사회적인 행위의 하나로, 외부의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소리, 연기, 동작을 공개하는 행위이다. 공연에 출연해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출연자들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써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 내에서 주어진 역할의 인물로서 행동하게 된다.

공연 사진과 영상에서는 출연자들이 피사자가 된다. 이런 까닭에 공연예술기록에서의 초상권의 문제는 출연자들의 초상권 문제로 그 범위가 좁혀진다. 결국 공연예술기록에서의 초상권의 문제는

17) 최근 공연현장에서는 영상과 퍼포먼스를 결합시키려는 경향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정민은 무용 영상을 공연실황, 다큐멘터리, 영상기법을 통해 재연출한 무용영상, 영상을 위한 무용 등으로 구별하기도 한다(심정민, 전개논문, pp.63-67).



자연인으로서 출연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공연이라는 특별한 이벤트 속에서 이들이 담당하게 되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공적 인물 이론(public figure theory)’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미국의 법률이론으로, 공연 출연자들의 초상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공적 인물 이론’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 침해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보도나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권에 우선하는 법률적 이익 형량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sup>18)</sup>

공연예술에서의 출연자의 지위는 ‘공적 인물 이론’에서 언급하는 제한적인 공적 인물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제한적 공적 인물이란 어떤 공적인 논쟁의 이슈 해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논쟁에 뛰어들 사람을 의미한다. 특정한 논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사회적인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회적인 관심사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주제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보도해도 된다는 것이다. 공연은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공적인 활동을 구성하게 된다. 출연자들은 이러한 공적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해당 공연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서는 그 출연자들은 공적인 인물이 된다. 출연자를 공연과 관련된 공적인 인물로 바라본다면, 적어도 해당 공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 행위에 있어서, 예컨대 해당 공연에 대한 보도나 학술적인 평가의 과정에서 출연자의 초상권은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된다.

그렇지만 출연자의 지위를 공연이라는 사회적인 행위에 자발적으로 뛰어들 제한적인 의미의 공인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초상이 당사자의 아무런 허락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상권에 대한 위법성의 조각 사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상의 공개에 따르는 공적인 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공적인 이익이 개인의 인격 보호에 비해서 가치가 크다고 인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연 현장에서 제작된 영상의 활용과 관련해서 연주자의 초상권이 인정된 판례<sup>19)</sup>가 존재한다.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들이 예술가로서 갖는 자부심과 명예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드라마 전개 상 연주회 장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촬영의 의도나 내용에 관하여

18) 박용상, 전제서, p.249.

19) 서울중앙지법 2006.11.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5.27. 선고. 2007나11059 판결.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42201 판결. 첼로연주자인 A를 비롯한 클래식 연주자 4명은 방송드라마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촬영을 허락하였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내용과는 달리 연주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된 화면이 드라마로 방영되었고, 이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원고 1인당 1,500만원으로 위자료가 상향조정되었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고등법원에서의 원심이 확정되었다.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실연을 촬영하고, 이후 허락받은 조건에 맞지 않게 편집·방송한 점, 연주회 당시 원고들은 이OO이 창작한 현악4중주곡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제작하고 방영한 드라마의 연주회 장면에서는 원고들과 전혀 무관한 피아노곡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됨으로써 원고들의 연주행위가 공연으로서 갖는 의미가 완전히 무시되고 그 일체성이 해체되어 단지 드라마의 시각적 효과만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 점”을 이유로 들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공연예술기록의 초상권 문제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출연자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의 제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초상과 공연의 일체성이 해체되고, 초상이 단지 다른 저작물이나 다른 목적을 위한 소도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연이 공연 그 자체로써 활용되면서, 공연의 내용을 사회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보도나 조사, 연구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성할 수 있지만, 실제 공연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이 요구하는 데로 적법하게 초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상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대개의 공연은 다수의 출연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초상 사진 촬영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영화나 방송 드라마의 제작과는 달리 공연은 촬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곧바로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지만 공연주최 측이 공연에서 벌어지는 세부적인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연자 모두에게 별도로 개별적인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것도 그리 합리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공연주최 측에 의해서 제작된 실황 기록의 경우 촬영에 반대한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다면 촬영에 동의한 것이라고 추정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최 측이 아닌 제3자가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연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실제적인 동의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초상권은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초상의 대상이 되는 실연자 모두에게 개별적인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기록 제작을 위한 절차가 너무나 번거로워져서 기록 제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저작권법의 저작인접권과 관련되는 규정은 초상권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저작인접권과 초상권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동일하고, 이 경우에는 궁극적인 행사의 방법과 효과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 더욱이 동영상의 경우에는 영상의 제작 자체가 공연의 복제에 해당되어서 합법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도 함께 받

아야만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 저작권과 초상권의 문제를 모두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동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의 행사 방법을 저작권법 제77조에서 상세히 정해 놓고 있다.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실연자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출자나 지휘자가 실연자를 대표해서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독창이나 독주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실연자의 대표에게서 받는 허락과는 별도로 독창자 또는 독주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상권에 대한 실연자의 동의는 실연자 가운데 선출된 대표나 선출된 대표가 없을 경우에는 연출자나 지휘자, 그리고 독주자나 독창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기록이 제작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 활용의 과정에서는 기록물이 공연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활용되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그 일체성이 훼손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판례에서처럼 초상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그 활용의 목적이 과연 공익적인 취지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함께 살펴서 초상권에 관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대개 공연예술아카이브에서의 공연 실황의 활용은 공연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예술 창작, 조사,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초상권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나. 기획·편집된 공연 사진과 영상

공연을 바탕으로 하지만 공연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새로운 저작물로 생산되는 기록의 경우, 초상권 문제는 공연실황 기록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공연의 홍보를 위해서 공연과는 별도의 퍼포먼스를 실행하면서 제작한 홍보 사진은 홍보에의 활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이 된 것이다. 따라서 홍보 사진의 제작에 배우가 응했다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연습과정, 공연실황, 배우에 대한 인터뷰를 한 데 묶어서 별도의 편집 과정을 거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은 공연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저작물이 된다. 이 경우 다큐멘터리는 영상저작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록물이 영상저작물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영상의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들이 그 용도와 공표 방법에 동의한 상태에서 촬영에 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초상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어떤 영화에 출연한 영화배우의 배역 사진이 그 배역이라는 가면 뒤의 작중 인물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sup>20)</sup>이 내려진 바 있다. 또한 일본의

20) (RG 103, 319 : BGH NJW 1961, 558. : 박용상, 전게서, p.526 재인용.

“마크 레스터(Mark Lester)” 사건<sup>21)</sup>에서는 배우에게는 초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권적인 측면에서의 권리인 퍼블리시티권만을 별도로 인정하여 배우의 경우에는 초상권 적용에 있어서 일반 인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2)</sup> 해외의 판례를 우리 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초상권과 관련되는 근본적인 취지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들이 제공하는 시사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2. 예술가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

공연예술아카이브에 수집된 사진과 동영상은 공연현장에서 생산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공연 현장과는 무관한 작가, 연출가, 배우, 무용수의 일상생활과 성장 기록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의 주인공이 되는 예술가의 초상은 실제로 공연과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별도의 기록물이다. 따라서 공연이라는 특별한 이벤트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러한 기록물은 일반적인 사진기록의 수집과 활용에 따르는 초상권 문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런 사진들은 해당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제공에 의해서 수집된 것들이고, 사진의 촬영은 그 주인공의 동의하에 또는 그들의 자발적인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사진의 제작과 관련된 초상권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진을 공연예술아카이브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초상을 공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한 예술가가 자발적으로 기증한 사진이나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는 해당 예술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록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를 구분하기도 매우 어렵고, 설령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일일이 초상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기록물의 등장인물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아카이브 자체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사진의 공개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1) 원고인 마크 레스터가 주연한 영화 “작은 목격자”에서 원고의 상반신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장면을 초콜렛 광고에 무단 이용한 사안에 대해서 “배우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가 감축되는 반면, 일반시민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에 관하여 통상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배우는 그의 성명이나 초상의 권한 없는 사용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일본 판례 사상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가 되었다.

22) 이호흥, 전계서, p.42.

공연예술아카이브가 기록물을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공연예술을 창작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이러한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적인 목적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이러한 종류의 초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의 차원에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기록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개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다. 지나치게 내밀하고 사적인 그리고 민감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운영 취지와 기록물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자의 인격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개연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기록물들은 예술가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두루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적용되는 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초상권은 인격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초상권을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프라이버시로 보호를 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사진기록물의 공표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격권 보호를 위한 독일의 법률이론 가운데 하나인 '인격영역론(Spärentheorie der Persönlichkeit)'은 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인격영역론은 사람의 인격과 관련되는 사항을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영역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을 구별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인격영역론은 독일의 판례와 학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준으로 폭넓게 수용이 되고 있다. 법적 보호 대상인 인격적인 가치의 영역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해당 영역에 따라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1><sup>23)</sup>은 인격영역론과 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가부의 요건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내밀영역은 자아의 핵심적인 영역에 속하는 내심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 세계관적 의무나 확신·감정뿐만 아니라 간절한 원망이나 두려움 등 극단적인 내심의 비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랑의 영역으로서 성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내밀영역은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 절대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이다. 비밀영역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공공에게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될 인간의 생활영역을 의미한다. 비밀영역은 공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적인 제3자의 인지 및 침입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밀보호의 효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서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와 긴장 관계에 서게 될 수 있다. 그 비밀관계자의 이익은 여러 사정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공개의 이익과 형량하여 그 보호여부가 결정된다<sup>24)</sup>. 사적 영역은 가족이나 친구, 친지와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을 말한다. 개인의 혈통·가계·성격·습

23) 박경신, 전계논문, p.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24) 정만희, "프라이버시권 : 언론보도에 의한 침해와 구제를 중심으로," 고서계, 2000년 11월호(2000. 11), pp.45-48.

관·질병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 사적 영역은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에 비해서 보호의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유명인이나 정치인 등 사회적인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영역의 사실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때 역시 공공의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 형량에 따라 보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 영역은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 영역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으며, 공개적 영역의 경우에는 인격권적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표 1> 인격영역론의 생활영역 구분과 그 보호의 정도

인격 영역	정의 및 사례	보호의 정도와 공개의 여부
내밀 영역	인간 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적인 영역 성생활, 신앙, 세계관 등	절대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공개 불가
비밀 영역	사회통념상 이성적인 평가를 할 경우 공공에게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될 인간의 생활 영역 비밀기록이나 대화, 통신내용 등	공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사적인 제3자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공개는 공적인 이익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 크고,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 가능
사적 영역	가족이나 친구, 친지와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 개인의 혈통·가계·성격·습관·질병	원칙적으로 공공과 국외자에게 의한 인지로부터 보호 당사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공개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공적 이익이 비교형량하여 클 경우 공개 가능
사회적 영역	주위와의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진 영역 직업활동, 행사참가, 거리통행 등	대중 속의 익명적 존재로 활동하는 경우는 공중의 일원으로 등장하지만, 공공의 지향의식이 결여된 경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함.
공개적 영역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고, 어떤 경우 모든 사람이 인식해야만 하는 인간생활의 영역 공중을 향해 이루어진 영역 정치가, 학자, 예술가의 공적인 등장	폭로로부터의 인격권적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완전 공개 가능

인격영역론은 예술가들의 일상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류 기준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예술아카이브는 사진과 영상을 서비스에 제공하기에 앞서서 그 내용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분류 항목별로 공개의 범위와 수준을 정해서 서비스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공개의 이익이 초상 보호의 이익 보다 클 것으로 유추되지만 초상권을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상의 열람만을 허용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그 공개의 범위와 수준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내밀영역과 비밀영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록물의 공개에서 우선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초상당사자가 사망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해서 그 인격권을 해칠 가능성이 없고, 역사적인 연구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경우에 한해서는 그 공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적인 영역의 초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적 영역은 초상 당사자의 초상 보호에 대한 이익과 공적인 이익을 비교衡量해서, 그 공개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서비스는 예술창작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예술사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된 인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그의 예술가로서의 삶과 예술적 체험을 소상하게 밝히는 데 적잖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유명 예술가들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는 기록의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유명예술인의 범위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는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공연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공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교적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예술가들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공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해당 사진을 직접 온라인에 서비스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상에서의 열람은 허용을 하고, 그 복제에 대해서도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인 영역과 공개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나 방법상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개해도 무방할 것이다.

## IV.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운영과 초상권

### 1.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도서관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의 보존과 전달이라는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적인 목적을 띄고 있는 까닭이다. 공연예술아카이브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도서관의 일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공연예술아카이브는 공연예술의 창작과 연구, 교육에 필요한 기록물을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공연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초상권의 문제는 저작권과는 또 다른 차원의 법률문제이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이 공공적인 목적과 취지에서 그 면책을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초상권과 관련해서도 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초상권은 절대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과 초상 보호의 이익의 비교·衡量을 통하여 개인적인 초상 보호의 이익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기록물 서비스는 대체로 그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기록물 서비스가 순수한 예술적, 학술적, 교육적인 차원의 공익적인 취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한 사진기록물과 영상기록물의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초상권 책임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운영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 2. 수집과 제작

초상권의 문제는 기록물을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초상기록물이 제작될 때에 어떠한 조건으로 제작이 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은 나중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해서 사용하는 것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물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연예술아카이브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모체기관으로부터 기록물을 이관 받는 경우, 구입과 기증을 통해서 수집하는 경우, 아카이브가 주체가 되어 직접 제작하는 경우 등 다양한 입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수방법은 대개 아카이브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 타인의 증여에 의해서 제공된 것, 구입을 통해서 입수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기록물의 공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문제의 대처요령은 달라질 수 있다. <표 2>는 기록물의 입수방법에 따른 초상권 문제에 대한 점검사항을 제안한 것이다.

<표 2> 기록물의 입수방법에 따른 초상권 점검사항

입수방법	점검 사항
자체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에 대한 동의 후 촬영(실연자의 대표 또는 연출자/지휘자의 허락)</li> <li>○ 동의의 범위에 기록물의 활용 방법과 공표의 방법에 관한 사항 포함</li> </ul>
증여에 의한 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촬영이 이루어졌는가?</li> <li>-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아카이브에 제공되었는가?</li> <li>-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입수되었는가?</li> </ul> </li> <li>○ 기록물의 내용과 서비스의 목적과 범위에 따른 공개 범위 결정</li> </ul>
구매에 의한 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의 제공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작 당시 초상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li> <li>○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li> </ul>



먼저 아카이브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사진이나 영상의 경우에는 그 제작의 단계에서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공연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상당사자들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공연의 모든 출연자들에게 이러한 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연자 가운데 대표자가 선출이 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출자나 지휘자를 통해서 사진과 영상제작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 때 동의의 내용은 향후 이루어질 기록물의 사용 방법에 관한 것들까지를 두루 포괄할 필요가 있다. 촬영에의 동의가 기록물의 공표에 대한 동의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물이 아카이브를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되고, 온라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영상물의 경우에는 촬영 자체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 관련되는 문제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초상권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둘째, 타인의 증여에 의해서 입수된 기록물들은 대체로 타인에의 공개를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초상당사자의 적법한 허락을 받아서 제작된 것인지,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인지를 완벽하게 확인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기록물이 적법한 동의의 과정을 거쳐서 작성이 된 것인지, 기록의 공개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증여자가 기록을 입수한 방법은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록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작이 되고, 적법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서 입수된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초상권과 관련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록물의 내용과 서비스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아카이브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공개의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셋째, 시중에 시판되는 것을 아카이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이다. 대개 이 경우는 기록물 자체가 공중의 판매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과 관련되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록물을 자유롭게 열람이나 온라인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정보서비스와 공표

공연예술기록의 초상권의 문제는 기록물의 수집과정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서비스의 과정에서 불거질 개연성이 훨씬 높다. 공연예술아카이브가 기록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서비스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는 기록물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초상당사자가 원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공표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록의 공개 방법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열람, 온라인서비스, 복제물의 이용자 제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의 열람은 아카이브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면에 온라인상에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은 지리적인, 시간적인 제약 없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다. 한편 기록물을 복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3의 다른 이용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물을 공개하기에 앞서 기록 공개가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을 기록물의 내용과 공개의 범위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검토한 바 있는 독일의 인격영역론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그 공개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표 3>은 기록물의 내용을 인격영역론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서비스의 범위를 제안한 것이다.

<표 3> 인격영역론에 따른 기록물 공개의 범위 제안

인격 영역		오프라인	온라인	복제	보호기간종료후
내밀 영역		×	×	×	오프라인 공개
비밀 영역		△	×	×	오프라인 공개
사적 영역	유명인	○	○	○	○
	비유명인	○	×	×	○
사회적 영역		○	○	○	○
공개적 영역		○	○	○	○

내밀영역은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보호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영역의 경우도 내밀영역에 준하여 공개의 범위를 설정하되,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 오프라인상에서의 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어떤 경우가 비밀영역의 기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기록 공개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공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적 영역의 경우에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오프라인 상에서의 열람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카이브의 서비스가 지향하는 공공의 목적은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침해의 문제에 충분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성할 수 있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기록물 제공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사적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학문

적, 예술적인 차원에서 일반에게 공개될 필요를 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제공이나 복제까지도 가능하도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인 영역이나 공개적 영역의 경우에는 기록의 사회적 공유라는 맥락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기록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실황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의 경우에는 공개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인격영역론에 따른 서비스 범위의 차등화 이외에도 기록의 실제적인 내용과 공표 방법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4>는 기록물의 서비스 제공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초상권과 관련된 점검 사항을 제안한 것이다.

<표 4>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서비스를 위한 초상권 점검 사항

과정	점검사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격영역론에 따른 내용 점검과 서비스 수준과 범위 설정</li> <li>○ 명예훼손적인 요소(초상의 왜곡이나 동일성의 훼손)가 존재하는 경우 공개 범위에서 제외</li> <li>○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보호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li> <li>○ 당사자의 사망시점 확인 필요(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공개 범위 확장 가능)</li> </ul>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에게 공표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 자유롭게 공표 가능</li> <li>○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교육적인 목적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성할 가능성 많음</li> <li>○ 공연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표되어야 함</li> </ul>

인격영역론에 따른 기준의 설정과 점검 이외에도 기록물 자체에서 초상을 왜곡하거나 피사자의 인격적 동일성을 훼손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초상에 대한 왜곡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초상권과는 별개로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가능한 공개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기록물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만 한다. 이 경우 기록의 공개가 사회적인 공공의 이익에 합당한 것인가의 여부와 함께 당사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진에 함께 등장할 수 있는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초상권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기준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하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격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초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사망 후 30년이 경과되었다면

특별한 제약 없이 그 초상을 공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공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록물의 수집과정에서 제작과 서비스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그 동의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관계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공표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술적, 학술적, 교육적인 목적에서 기록의 공개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의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연현장의 기록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이 공연 그 자체와의 동일성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도 반드시 함께 살펴보아야만 한다. 공연과 실연자와의 관계가 해체될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판례의 경우에서처럼 초상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 V. 닫는 말

공연예술아카이브는 공연의 재현과 복원을 위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새로운 공연의 창조와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예술아카이브가 수집하여 보존하는 기록 가운데 사진과 동영상은 실제 공연의 전모를 유추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공연사진과 영상기록은 출연자들의 움직임과 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초상권 문제에 연관을 맺게 된다. 지금까지 공연사진과 영상기록을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문제를 점검하였다.

초상권은 인간의 외면적 모습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하여 보호가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공공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제한되기도 한다. 초상권의 제한은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와 사회 공익적인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이익이 보다 큰 쪽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결정이 된다.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서비스는 예술을 창작하고, 연구하고,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생생하고 풍부한 기록을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일환이다. 이런 까닭에 국민의 알 권리와 직접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절대적인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한, 그 서비스의 대부분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연은 사회적인 표현 행위의 하나이고, 출연자는 공연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사생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출연자의 적절한 동의하에 제작된 공연사진이나 영상을

공연예술기록기관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초상권 면책의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출연자의 초상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연으로서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되기 어렵다. 한편 예술가들의 일상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에는 공연이라는 특수한 상황과의 연계 고리가 없는 일반 사진이나 동영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상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록물의 내용을 인격영역론에 따라 구분하여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조정하고, 아울러 기록물의 내용과 공표 범위와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공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공연예술기록의 초상권과 관련된 첫 연구로서, 실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상권 문제에 대비한 대응방안과 점검사항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연기록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카이브에서의 사진이나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초상권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실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고명식. “언론에 의한 초상권의 침해와 사법적인 보호법리.” 언론과 정보, 제9권 제1호(2003), pp.97-137.
- 김광요 등. 드라마사전. 서울 : 문예림, 2010.
- 김유철. “광고활동에 있어서 초상권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제24호(2010), pp.5-14.
- 류종현, 양재규. 기자와 변호사가 함께 쓴 초상권 이야기. 서울 : 한국방송기자협회, 2010.
- 박경신. “순수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가치인가, 규범인가.” 창작과 권리, 제51호(2008), pp.2-34.
- 박용상. 명예훼손법. 서울 : 현암사, 2006.
- 심정민. “무용의 공감각적 기억과 잔상을 보존하는 대안으로서 영상매체.” 에피스테메, 제4호(2010), pp.57-75.
- 유의선. “디지털 취재 환경에서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2008), pp.383-414.
- 이경률, 박현우. “상업사진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AURA, 제22호(2010), pp.101-110.
- 이정인. “현대미술에서 이미지 차용의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연구.”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2012), pp.171-209.

- 이진원. “한국 전통공연예술 사진에 대한 검토 : 1945년 해방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약기학, 제5권(2007), pp.57-83
- 이호흥. 초상권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상의 입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01.
- 정경석. 엔터테인먼트 : 비즈니스 분쟁사례집. 서울 : 청림출판, 2004.
- 정경석. “초상권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저스티스, 제98권(2007), pp.122-146.
- 정만희. “프라이버시권 : 언론보도에 의한 침해와 구제를 중심으로.” 고시계, 2000년 11월호(2000. 11), pp.42-54.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ng, Kyong Sok. “The Requirements and Recourses for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Portrait.” *Justice*, Vol.98(2007), pp.122-146.
- Chong, Kyong Sok. Entertainment : The Case of Business dispute. Seoul : Cheongrimchulpan, 2004.
- Jeong, Man Hui. “The Right of Privacy : Focus on infringement and protection by press.” *Gosigye*, 2000.11, pp.42-54.
- Kim, Kwang Yo. Dictionary of Drama. Seoul : Munyerim, 2010.
- Kim, You Chul. “A Study on the Violation of Portrait Right and Publicity Right in Advertisings.” *Illustration Forum*, Vol.24(2010), pp.5-14.
- Ko, Myung Sig.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ortrait and legal principles of Protection.” *Journalism and Information*, Vol.9, No.1(2003), pp.97-137.
- Lee, Gyong Ryul and Park, Hyun Woo. “A Study on the Right of Likeness Infringement in Commercial Photography and the Measure for the Remedy.” *AURA*, Vol.22(2010), pp.101-110.
- Lee, Ho Heung. A Study on the right of portrait : Focus on Copyright. Seoul : Korean Copyright Commission, 2001.
- Lee, Jeong In. “Infringement of the Appropriation of Portrait in Contemporary Art.” *The Journal of modern art*. Vol.16, No.1(2012), pp.171-209.
- Lee, Jin Won. “An analysis of Photography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 Focusing on before 1945.” *The Science of Korean Instrument*, Vol.5(2007), pp.57-83.
- Park, Kyung Shin. “Is the right of portrait as pure moral right value or norm?.” *Creation and Right*, Vol.51(2008), pp.2-34.

- Park, Yong Sang. Defamation Law. Seoul : Hyunamsa, 2006.
- Ryu, Jong Hyun and Yang, Jae Kyu. A Story of the right of portait. Seoul : Korean Broadcasting Reporter Association, 2010.
- Shim, Jeong Min. "Dance on Camera." *Episteme*, Vol.4(2010), pp.57-75.
- Yoo, Ui Sun. "Infringements of and Remedies for Likeness 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for News Gathering." *Journalism and Law*, Vol.7, No.1, pp. 383-414.